

대전복지재단 직원 채용계획 변경공고

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급변 변경공고는 응시자격(공통요건 추가), 어린이집원장에 대한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, 응시자격(분야별요건)의 자격요건 확대를 반영하고 있으며, 기타 모집분야의 자격요건 또는 일정 등에는 변동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>

2020년 10월 28일

재단법인 대전복지재단 대표이사

1.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

구분	채용분야		선발인원	담당업무	비고
	계		44명		
본부	2급	노무사	1명	• 노동법률 자문 및 지원(사회서비스원, 민간기관)	경력직
	3급	보육	1명	• 어린이집 등 국공립시설 위·수탁 준비 및 운영 등 • 산하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 개발 및 연구, 컨설팅	경력직
소속 시설	어린이집	원장	3명	• 위·수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	경력직
			1명		• 위·수탁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
		보육 교사	4명	• 위·수탁 어린이집 보육업무 • 영유아 보육, 건강관리, 보호자 상담, 관리운영 등	경력직
	종합 재가 센터	센터장	1명	• 위·수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	경력직
		센터장	2명	• 종합재가센터 총괄 운영	경력직
사회복지사		1명	• 인력관리, 사례관리, 행정관리 • 회계관리, 문서관리, 사무보조 등	경력직	
요양보호사 (종일)		8명	• 서비스매칭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• 재가방문요양 업무 등	경력직	
	요양보호사 (시간제)	22명	• 서비스매칭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• 재가방문요양 업무 등	신규	

*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 운영을 거쳐 근무 적격자에 한해 정식임용

2. 응시자격

1) 공통요건

- 대전복지재단 인사규정 제32조에 의한 정년(60세)에 달하지 아니한 자
- **경력인정 기준은 본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**

2) 분야별 요건

- (본부) 공고일 현재 주소(주민등록)가 **대한민국**에 있는 자
- (어린이집 · 육아종합지원센터 · 종합재가센터)

공고일 전일 현재 주소(주민등록)가 **대전광역시**에 있는 자 / 지역제한

구분	직 급	자격기준
본부	2급(노무사)	○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2. 노무사 경력 5년 이상인 자
	3급(보육)	○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소지자 2.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어린이집	원장	○ (경력직)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 21조 제1항에 따른 (일반)원장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2. 어린이집 원장 경력 5년 이상을 포함 총 보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.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통과한 자
		○ (신규)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 21조 제1항에 따른 (일반)원장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2. 어린이집 보육경력이 10년 이상인 자
	보육교사	○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2. 영아반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 어린이집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
육아 종합 지원 센터	센터장	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종합 재가 센터	센터장	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시설장 경력 1년 이상자 중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(노인요양,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돌봄종합) 기관 관리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2.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(노인요양,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돌봄종합) 기관 관리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
	사회복지사	○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상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2년 이상자 2. 종합재가센터 관련사업(노인요양, 장애인활동지원, 노인돌봄종합) 기관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	요양보호사 (종일제)	○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2.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기관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
	요양보호사 (시간제)	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

※ 경력인정 범위 :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만 경력 인정

※ 어린이집(원장, 보육교사), 육아종합지원센터장 : 만 2년 이상의 업무 공백이 있는 경우 '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' 수료증(또는 교육 신청 완료 증빙서류) 필수 제출, 입사 지원 시 수료번호 입력

※ 보육전문요원 자격 :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※ 종합재가센터 관련 사업 경력인정기준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3조 제1항 1호(재가급여 중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 및 노인요양시설 사업의 업무경력
2.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 제1항 1호(방문요양), 2호(주야간보호), 3호(단기보호), 4호(방문목욕), 5호(그 밖의 서비스 중 방문간호) 사업 및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경력
3.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경력
4. 「장애인활동지원」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업무 경력

3) 응시자격 제한

－ 공통사항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)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)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12.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.
1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14. 경력,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
15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16.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－ 어린이집(원장, 보육교사), 육아종합지원센터(센터장)

<영유아보육법 제16조, 제20조, 제46조~48조>

*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3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8.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9. 제46조,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 - ※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
10.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(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*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※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.
11.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(원장, 센터장)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 8의 2]에 따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

－ 종합재가센터장, 요양보호사

<노인복지법 제39조의13~14, 제39조의 17, 사회복지서비스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>

* 요양보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가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2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3. 피성년후견인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
6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 된 자
7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4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(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8.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 제1항에 따른 ‘취업제한명령’중인 자

* 종합재가센터장(사회서비스 제공자)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「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「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3. 근로조건(보수 및 처우)

1) 본부

- 2급(노무사): 계약일 ~ 수습기간(6개월) 후, 내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

채용분야	상한액	하한액	근무시간	비고
2급	75,914천원	50,584천원	월~금 09시~18시 / 주40시간	- 재단 규정 및 내규 준용

- 보수기준: 해당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의 하한액 적용
- 복리후생: 재단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(특정업무경비수당 등) 지급
※ 2020년 12월 임용 예정

- 3급(보육): 계약일 ~ 수습기간(6개월) 후, 내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

채용분야	상한액	하한액	근무시간	비고
3급	62,044천원	44,066천원	월~금 09시~18시 / 주40시간	- 재단 규정 및 내규 준용

- 보수기준: 해당연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기준의 하한액 적용
- 복리후생: 재단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
※ 2020년 12월 임용 예정

2) 소속 시설

- 대 상: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, 종합재가센터

- 근무시간: 월~금 09시~18시 / 주40시간

- 근무지: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운영시설

※ (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)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한 어린이집(4개소) 배치 예정

※ (육아종합지원센터장) 사회서비스원이 수탁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배치 예정

- 보수기준:

①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: 보육사업 지침 준용(복지부 인건비 지급 기준)

* 경력 산정은 구청 임면보고일 기준

• 부가급여: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

② 종합재가센터 :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(지침) 및 재단 내규 준용

※ 계약일 ~ 수습기간(6개월) 후, 내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임용 예정

• 부가급여: 종합재가센터 운영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

4. 시험방법

1) 서류전형

- 심사일시: 11. 09.(월)

- 심사위원 구성: 2명

- 심사방법: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 심사(적격, 부적격 결정)

※ 응시자격 부적격자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11. 10.(화) /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

2) 필기시험

- 대 상: 서류전형 합격자

※ 2급(노무사)는 2차 필기시험은 인·적성검사만 실시 / 요양보호사(시간제) 필기시험 제외

- 일 시: 11. 17.(화) 13시

- 시행방법: 채용 전문업체를 통한 필기시험(전공시험), 인·적성검사(면접 시 참고)

- 소요시간: 약 4시간 ~ 5시간

- 서류제출: 자격 우대 사항 증빙 서류(원본) ※ (참조) 가산점 특전 및 우대

- 내용 및 유형

• 시험유형: 전공시험(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증) / 위탁업체에서 출제

※ 전공시험(사회복지실천론, 요양보호론, 보육학개론, 어린이집 운영 관련 등 5과목) 객관식 문항(각 20문항)

• 합격결정: 각 과목별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

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/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

※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

※ 2급(노무사)는 서류전형 합격(적격) 시 전원 2차 시험(인·적성검사) 후 면접시험 실시

※ 요양보호사(시간제)는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 실시

• 인성역량검사: 개인의 심신건강 상태, 적응성 측정(9개 영역, 27항목 / 30분)

영역	측정 항목
1	성실성, 건강상태, 근면성
2	솔직성, 성취감, 책임감
3	사회성, 대인관계, 협동성
4	능동성, 적극성, 자주성
5	자신감, 설외력, 지도력
6	규율성, 신뢰성, 준법성
7	신경발달, 순수성, 감정
8	정신건강, 행동안정, 정서
9	인내력, 집착성, 집중력

- 적성검사: 직무를 수행하는 기초직무능력, 부합하는 역량 및 적성 측정8개 영역, 24개 항목 / 60분

영역	측정 항목
1	지각력, 어휘력, 이해력
2	수의 원리, 암산술, 수리력
3	상상력, 비판력, 사고력
4	예측력, 결단력, 판단력
5	활용력, 검증력, 응용력
6	관찰력, 실험력, 탐구력
7	추론력, 표현력, 논리력
8	호기심, 문제의식, 창의력

- 면접대상자 발표: 11. 20.(금) /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

3) 면접시험

- 대 상: 필기시험 합격자
- 면접일시: 11. 24.(화) ~ 25.(수) 예정 / 미정
- 면접위원 구성: 운영 계획 추후 수립하여 추진
- 면접내용: 전문성, 발전성, 창의성, 윤리관, 성실성 등
- 면접평가 항목

(일반)

계	면접 평가 항목				
	전문성	발전성	창의성	윤리관	성실성
100점	20점	20점	20점	20점	20점

(어린이집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)

계	면접 평가 항목					
	발표점수	일반면접				
		전문성	발전성	창의성	윤리관	성실성
100점	50점	10점	10점	10점	10점	10점

※ 단, 전문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 당일 전문주제 논술을 실시 할 수 있다.

※ 어린이집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면접 시, 발표 면접(운영계획) 실시

- 발표내용 : 보육사업 계획,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, 센터운영 등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
- 발표시간 : 약 10분(ppt 발표, 필기시험 합격자 중 면접일 전 발표자로 제출)
- 평가방법 : 발표 면접에 대한 별도 평가를 포함한 합산 점수로 평가

- 면접방법: 심층면접(질의 응답식 블라인드 면접) 및 발표면접
- 합격자 결정: 필기시험+면접시험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
(필기 및 면접심사 반영 비율 60:40)

※ 2급(노무사), 요양보호사(시급제) 면접시험 비율 100

• 동점자의 경우

- ① 전문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- ② 발전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
• 면접시험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이고,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2인 이상의 면접심사위원이 일반적_중하(8점), 어린이집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_중하(4점) 이하로 평가한 경우 당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으로 처리(대전복지재단 인사 내규 제12조 의거)

- 응시자에 대한 의의제기 절차를 안내하고,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선발 (대전복지재단 인사규정 제8조의1에 의거)

※ 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합격후보자를 선정, 순위별로 채용

-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: 11. 26.(목) / 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안내

- 채용 예정일: 2020. 12월 (예정)

4) 가산점 특전 및 우대

- 가점은 필기 전형의 과락 또는 불합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됨
- 가산점은 아래 대상 범위 중 하나만 적용함

대상	우대자격요건	가산점수	증빙서류
취업지원대상자	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자	5점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상의 장애인	5점	장애인증명서

5. 응시원서 접수

- 1) 공고기간: 2020. 10. 23.(금) ~ 11. 06.(금) / 15일간 ※ 변경공고 10. 28.(수)
- 2) 접수기간: 2020. 11. 02.(월) ~ 11. 06.(금) 18:00 / 5일간
- 3) 접수방법: 방문 또는 우편접수 / 근무시간 내 접수
(단,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 분만 유효)
※ 주소: 우)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10층 대전복지재단

6. 입사 지원 서식

- 1)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(소정서식)
- 2) 자기소개서 1부(별도 서식)
- 3)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도 서식) / 2급, 3급, 종합재가센터장만 해당
- 4) 운영계획서 1부(별도서식) / 어린이집원장, 육아종합지원센터장만 해당
- 5)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(소정서식)
※ 응시원서는 운영시설 포함 1인 1분아만 지원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7. 시험일정

- 1) 서류전형: 2020. 11. 09.(월) / 합격자발표: 11. 10.(화)
- 2) 필기시험: 2020. 11. 17.(화) / 합격자발표: 11. 20.(금)
- 3) 면접시험: 2020. 11. 24.(화) ~ 25.(수) / 합격자발표: 11. 26.(목)
※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

채용분야		1차 (서류전형)	2차(필기시험)		3차 (면접시험)	비고
			인·적성검사	전공시험		
2급	노무사	○	○	-	○	
3급	보육	○	○	보육학개론(20) 어린이집운영관리(20)	○	
어린이집	원장	○	○	보육학개론(20) 어린이집운영관리(20)	○	발표면접
	보육교사	○	○	보육학개론(20) 보육교사론(20)	○	
육아종합	센터장	○	○	보육학개론(20) 어린이집운영관리(20)	○	발표면접
종합재가센터	센터장	○	○	사회복지실천론(20) 요양보호론(20)	○	
	사회복지사	○	○	사회복지실천론(20) 요양보호론(20)	○	
	요양보호사 (종일제)	○	○	요양보호론(20)	○	
	요양보호사 (시급제)	○	-	-	○	

8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
- 합격통보 및 서류 제출 안내 : 개별 이메일 발송으로 안내
 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 - 재직(경력)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 -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1통)
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기본증명서 1부
 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1부
- 최종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사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임용
 ※ 경력은 **경력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**가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함
 ※ 경력증명서에는 **근무처, 부서, 직위, 근무기간, 근무내용**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.
 ※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양식을 준용하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
 ※ 최종 합격 되지 않은 응시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제출한 서류(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 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음)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채용확정 이후 14일 이내 반환 청구 시 본인 확인 후 반환(확정자 제외)하며,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채용서류를 반환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, 일정은 대전복지재단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**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**
-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응시자는 제출 서류 상 학력, 성별,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, 모집 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분야 응시원서를 작성하시기

바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기재, 연락 불능 등 공고내용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 응시원서 등 제출 서류의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, 허위 내용 작성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어린이집원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,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 2일전까지 발표자료(ppt) 제출 및 발표(10분)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바랍니다.
- 응시자는 공고문 등에서 안내하는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응시원서는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
- 책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대전복지재단에서 동시 진행되는 채용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신체검사, 결격사유조회, 증빙서류 확인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6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 중 진행된 평가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고, 기타 사유로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 추가 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- 어린이집원장 및 교사,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우 사회서비스원의 시설 수탁여부에 따라 1년 이내 발령이 어려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 계획은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전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복지재단 경영지원부(☎042-331-89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